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6
----------	------

제출년월일 : 2005. 7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우리시에 유수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타시·도와의 차별화를 두어 개별기업과 제천바이오밸리(지방산업단지)내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마련하여 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이전보조금 : 본사,연구소,공장이전보조금 투자비용의 5%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부지매입비용의 5%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제3조)
- 관내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 제천시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가동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 이상 일때 20억원을 초과한 투자비용의 5%범위안에서 2억원 까지 지원(제5조)
- 고용촉진보조금 : 제천시 6개월이상 거주자 상시고용인원 20명초과시 초과인원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2억원까지 지원(제6조)
- 교육훈련보조금 : 제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6개월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제7조)
-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제11조)
 - ①. 본사,연구소,공장의 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30%범위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 ②. 본사,연구소,공장의 상시고용인원 150인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40%범위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 ③. 본사,연구소,공장의 상시고용인원 200인이상 이거나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50%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수도권소재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제13조)
 - 외국인투자기업지원 : 국내기업의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제27조)
 - 포상금지급 :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자, 최고 건당500만원(제40조)

3.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1.16 법률 제07061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6]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년-101호(2004.10.11)와 충청도조례 제2831호(2004.11.26)

4. 의 안 전 문 : 불 임

첨 부 : 가. 근거법령 등 1부

나.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1부.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 및 연구소를 제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소득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 및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본사 및 연구소 이전에 따라 당해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연구소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투자비용의 5%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본사 및 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에 따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비용 제외)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이전기업이 개별입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

원 까지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이전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이전기업투자액의 1%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입지지원 등)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임대기간 1회에 해당하는 5년간 지원한다.

제5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한방바이오관련제품 제조업
- 2.한의학 제품 제조업
- 3.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첨단산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건물취득,시설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①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제천시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고용인원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장은 이전기업이 제천시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세제감면)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지원)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기업과 지원규모는 제천시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범위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범위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액 한도)이전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은 부지매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

제14조(설치)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기업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 2.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한 사항과 적용기준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3.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4.기업유치와 관련한 민간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
- 5.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제천시의회 의원

- 2.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3.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 4.투자유치 관련공무원
- 5.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실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투자진흥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재원)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시 출연금
- 2.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기타 보조금 출연금·차입금 등

②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1.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보조금과 지원금
- 2.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 3.기타 시장이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27조(산업단지 입지보조금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임대료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보조금은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고용보조금지원)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컨설팅 보조금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2. 의약·한방바이오관련산업등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

2. 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6장 보 칙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문서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 등)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본사,연구소,공장)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이전 일부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지원받아 매입한 부지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

3.이전 후 10년이상 사업(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을 영위하여야 하며 10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장은 매각대금 중 국가지원비율 및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4.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고용촉진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각종지원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보조금 지원이 목적달성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9조(민간전문가등 활용)①시장은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방산업단지분양 등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중·대규모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업에 해당하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자금지원을 받는 수도권소재기업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전 이전기업의 분양 등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4. 1. 16, 제07061호)

제19조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6조

(제정 2004.3.29, 제18346호)

제16조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자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기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자원부고시, 2004. 10. 11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충청북도기업및임자유치등에관한조례
(2004. 11. 26, 제2831호)**

제9조(입지보조금) ①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하여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토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인근 산업단지내 동일 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업유치 지원)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0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0.11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중 략 -----

●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정 2004. 11. 26 조례 제28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략 -----

제9조(보조금 지원) 1. 토지사용 신청자의 부장관이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하여 신청 토지가격 또는 전상 임대료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발업자의 토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임대사업단지내 동일 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율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임대료를 50년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유치 지원) 1. 토지사용 신청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사업은 성공하여야 지원 지원하여야 한다.

2. 토지사용 신청자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2004.11.12 조례 제5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2. 원주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투자유치 지원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원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 지원

제14조(산업단지 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적인 임대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되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건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건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건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의료기기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원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2조(임지지원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내 중소기업 투자지원)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부품 관련업종
2. 자동차부품, 기계제조업
3.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첨단산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이상일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대규모 투자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2.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3.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이전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 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